

-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-

2026년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초격차 R&D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 기술의 기술이전·사업화·글로벌 확산을 지원하는 전북 중심의 바이오 전략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초격차 R&D 과제의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1일

한국화학연구원 부설 국가독성과학연구소장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

지원개요

사업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바이오기업의 단계별·기술별 육성을 위한 맞춤형 초격차 R&D 지원을 통해 보유 기술 밸류업 및 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 및 제품경쟁력 확보

사업내용

사업명	•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'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'
사업내용	• 지역 내 첨단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초격차 R&D 지원
지원규모	• 1건, 8.5억 이내
지원유형	• 초격차 R&D
지원분야	• 국가전략기술(바이오)
특이사항	• 지원금 5억당 1명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
관리기관	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• (재)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바이오신산업기획팀

2

지원 세부 내용

□ 지원규모

유형	과제 수	지원규모
초격차 R&D	1건	8.5억 이내

※ 과제 수 및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수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지원규모는 1차년도만 확정임

□ 지원내용

구 분	초격차 R&D	
과제기간	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* 단, 검토위원회 및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구축사업 협약변경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	
지원금액 (과제당)	과제기간 동안 최대 8.5억원 이내* (1차년도 4억원 및 2차년도 4.5억원 이내*) * 지원금액은 1차년도만 확정이며, 총 지원금액은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	
지원내용	미래 유망 첨단바이오(신약, 줄기세포, 유전체, 차세대 의료기술 등)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, 원스톱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	
지원분야	- 국가전략기술(바이오) 분야	
	기술분야	
	합성생물학	생명과학에 공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공적으로 생명체 구성요소·시스템을 설계·제작·합성하는 기술
	유전자·세포 치료	유전자 결함보완·기능추가 관련 유전자치료제 또는 세포·조직 기능 복원 관련 세포치료제의 개발·제조 관련 기술
	감염병 백신·치료	신·변종 및 미해결 감염병 발생시 관련 백신·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·제조할 수 있는 전달물질 및 후보물질 발굴 등의 기반 기술
디지털헬스 데이터	바이오·의료 데이터를 수집·생성·통합·분석하고, 개인맞춤형 진단·치료·예방·건강관리 및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기술	
추진방식	기업 주도 컨소시엄 ※단, 컨소시엄 구성기관 중 1개 이상 도내 소재 1) 기업주도 컨소시엄 방식 : 주관(첨단바이오 기업) + 참여(대학 연구기관 등) - 주관 + 참여1 일 때, 지원금 비율은 주관 60% 이상, 참여 40% 이하 - 주관 + 참여1 + 참여2 일 때, 지원금 비율은 주관 40% 이상, 참여 각각 30% 이하	

※ 지원금액은 신청과제 수, 검토 결과 및 심의위원회 결과 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3

신청자격 ※ 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

□ **주관기관*** : 접수마감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기업 (법인 및 개인사업자)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

* 사업계획서 접수시 주관기관으로 기재하나, 본 사업 선정시 “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”의 공동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함

① 도내 창업(기술)보육센터*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**을 하였거나, 사업장 소재 기업 (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)

* 중소기업진흥공단, 대학, 국공립·정부출연 연구기관,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·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

**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공장

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거나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 예정인 기업

※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,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, 미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은 위 기준을 면제함

- 단, 전주시·익산시·정읍시에 투자를 확약*한 기업은 ①호 기준을 면제함

* 신청서류 제출시 전주시·익산시·정읍시와 체결된 투자협약서 제출 必

□ **참여기관*** : 정부출연(연), 유관 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 등

※ 단, 컨소시엄 구성기관 중 1개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해야함

* 사업계획서 접수시 참여기관으로 기재하나, 본 사업 선정시 “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사업”의 공동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함

4

지원금 지원기준 세부 사항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

○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 ¹⁾	중견기업 ²⁾	공기업 ³⁾ ,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 ⁴⁾ , 이외의 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%이하	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%이하

- 1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2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 - 3) '공기업'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
 - 4) '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'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
- *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% 이하 지원 가능

○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	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	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	10% 이상	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	필요시 부담
	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	13% 이상		
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
- 비영리기관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
 -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

□ 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- 중소·중견기업의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
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
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

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
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(만 18세~34세)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
 - ※ 신규채용 연구원(청년인력)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25년 8월 11일~)부터 과제 종료 시 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
 - ※ 군 복무 시 복무 기간만큼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이 가능하며 군 복무기간은 연월수로 산정하되,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함
-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,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 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
-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(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,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,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)

< 예시 >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.5억원의 R&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
 -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8.5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
 -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(V표시)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

사업연도	1차년도			2차년도		
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	4억			4.5억		
매 5억원 이상인 시점				V		
채용 사례	1명					

□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·장비 도입 시 ‘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’에 따라 국가 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
 - ※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(red.zeus.go.kr)에 심의 신청

-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·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·장비를 도입할 경우,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(zeus.go.kr)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
- 연구개발성과의 소유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)
 -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
 -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
 -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,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
 -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
 - 외국에 소재한 기관·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: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
 -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
 -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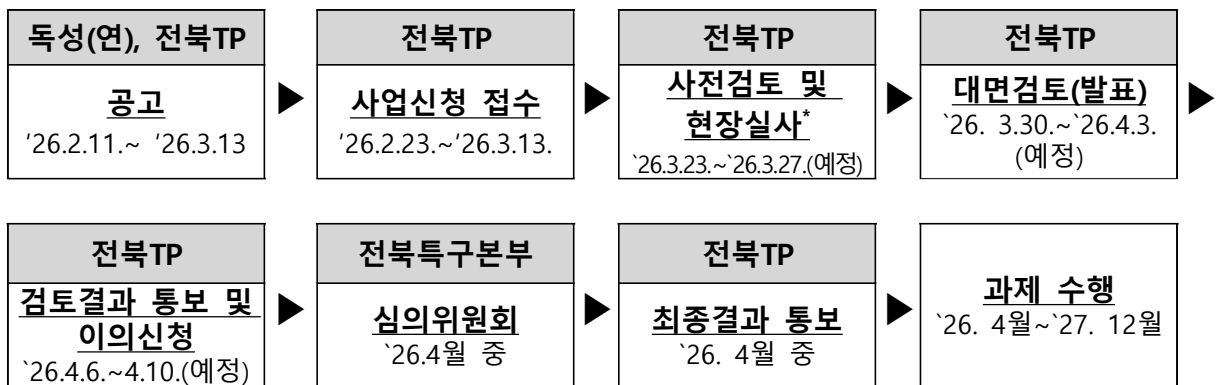
5

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체계



□ 추진절차



※ 1)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검토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. (사전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), 2)법정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"사회적 거리두기"가 시행 될 경우, 현장실사는 생략될 수 있으며, 대면검토는 서면검토로 진행 될 수 있음,

6

검토 항목·방법 및 유의사항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

-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
- ※ 본 사업 선정 이후 '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'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-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 -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※등기이사는 소속으로 판단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경우 (연구책임과제 3개, 연구개발과제 5개) 참여를 제한함(3책 5공 적용)

< 관련법령 및 규정 >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: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, 제3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, 제35조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,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
-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3.12.7.)

-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□ 검토항목

검토항목	세부항목	비중(%)
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	• 딥테크, 국가전략기술, 특화산업 부합성	20
	• 사업화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	30
사업화계획의 타당성	•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	25
	•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	
	•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	
	• 사업화 성과(매출, 수출 등) 달성 가능성	
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	•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	15
	•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	
수행기관 역량	•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	10
	•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	
계		100

※ 검토 항목 내 세부 항목은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검토방법

- 신규 공동기관 검토는 검토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, 대면 발표, 비대면 검토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
- 신청과제의 검토를 통해 검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 과제', 종합검토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
-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 - ※ 관련 규정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(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) 제3항 및 제15조(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)
-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(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)이 1:1 이하의 단독·미응모의 경우,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
 -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:1일 경우는 지원가능 검토접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검토로 추진하며,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
- 선정검토 시 가점사항 :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, 총 5점 한도
 -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유니콘 기업
 - 아기유니콘기업(1점)
 - 예비유니콘기업(3점)
 -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(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1건만 부여)
 - 전북특구 소재 기업(1점)
 - 전북특구 소재 연구소기업(3점)
 - 전북특구 소재 첨단기술기업(3점)
 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우수(혁신성과) : 90점 이상”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 - ※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“우수”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 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 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(1점)
 - ※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,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-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에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6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(1점)

※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

7 신청 및 접수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6.2.23.(월) ~ 2026.3.13.(금) 16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- 온라인 접수 : <http://rnd.jbtp.or.kr> (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)

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
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 미만)

□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, 제출서류 등 <http://rnd.jbtp.or.kr> 에서 다운로드
- 홈페이지 → 지역R&D 공고에서 확인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○	-	-	압축파일 (한글 1부, PDF 1부)
2 (필수)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서식 2호	○	○	○	PDF
3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○	○	○	PDF
4 (필수)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	-	○	○	○	PDF
5 (필수)	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	서식 3호	○	○	○	PDF
6 (필수)	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※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	-	○	-	-	PDF
7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4호	○	○	○	PDF
8	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(비교견적서 2개 포함) ※ 3천만원~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	서식 5호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	PDF
9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21~23)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0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11 (필수)	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¹⁾ 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12	우대사항 확인서 (증빙서류 포함)	서식 6호	○ (해당시)	-	-	PDF
13 (필수)	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	서식 7호	○	-	-	PDF
14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8호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PDF
15	전문연구사업자 증빙(원본대조필) ※ 해당기관(기술거래기관 지정서,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,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등)	-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PDF
16 (필수)	(별지)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(과제수행 현황)	서식 9호	○	-	-	PDF
17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10호	○	○	○	엑셀(Excel)
18	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(관련 증빙 별첨 필수)	서식 11호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○ (해당시)	PDF
19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12호	○	○	○	PDF
20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 ※ 모든 참여연구원 날인	서식 13호	○	○	○	PDF

* 본사가 도외일 경우, 입주계약서, 기업부설연구소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

□ **관련문의 :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바이오산업기획팀 류소정 주임연구원**
(☎ 063-534-5113, e-mail : funny1215@jbtp.or.kr)

10

유의사항

□ **신규고용 : 지원금 5억당 1명 이상 신규고용 의무**(최소 1명 이상, 소수점은 사사오입)

- ※ 협약 시 '신규인력채용(예정)확인서'를 제출하고, 실제 고용 시 참여인력변경 보고를 한 경우만 인건비 지원 가능
- ※ 학력제한 없음
(단, 현금 인건비 지급 연구원일 경우,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연구노트에 성실히 기재해야 되며, 연구노트 불성실 작성 및 미작성시 인건비 전액 불인정)
- ※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시 인건비 지급불가

□ 선정된 주관 및 참여기관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함

※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지 연구노트 작성 확인예정

□ 선정 후 협약대상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※ 연구소기업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)은 연구소기업 등록증으로 대체함

□ 연구과제의 정량목표는 추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

□ '신규고용 의무조건' 불충족시, 최종평가에서 '보통'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없음('미흡'이하로만 평가함)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)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-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

- 이미 개발된 R&D과제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 사업계획서의 제목, 개발 목표 등을 인터넷 공시하는 것

□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연구책임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제도를 폐지함

- 컨소시엄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만 구성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과제를 관리하며, 통합ez-baro를 통해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 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
-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 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
-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,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또는 전북테크노파크, 국가독성과학 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

※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